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영희 의원 발의]

의안번호	2442
------	------

발의일자 : 2023. 11. 15.

발 의 자 : 윤영희 의원

찬 성 자 : 장규권, 정재동의원

1. 제안이유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동물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내용 수정(안 제2조).

나.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사유(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동물보호법」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1) 현행 조례 : 별도 첨부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 첨부

3) 입법예고 : 2023. 11. 16. ~ 11.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제2조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제2호, 제8호,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1호) 중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법 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호(종전의 제5호) 중 “법 제35조”를 “법 제35조 및 제36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사육포기 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소유자등이 정상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기 어려워 구청장에게 인수를 요청한 동물을 말한다.

10.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기질평가”란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4. “맹견”이란 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6.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을 “법 제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25조제1항”을 “법 제5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고등교육법」 제2조”를 “「고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4.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제9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35조”로 한다.

제12조를 제9조의2로 하고,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

제9조의2(중전의 제12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15조제7항”을 “법 제36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15조제7항제1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중전의 제13조)제3항 중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4조(중전의 제15조)제4항 중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을 “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7조)의 제목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명예동물보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41조”를 “법 제90조”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명예동물보호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명예감시원”을 각각 “명예동물보호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을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u><신 설></u></p> <p><u><신 설></u></p> <p>1.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u>동물보호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p> <p>2. (생략)</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p> <p>1. “동물”이란 「<u>동물보호법</u>」(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p> <p>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p> <p>3. ----- ----- <u>법제2조 제1호</u>----- ----- ----- -----.</p> <p>7. (현행 제2호와 같음)</p> <p>8. “사육포기 동물”이란 「<u>동물보호법 시행규칙</u>」(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소유자등이 정상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기 어려워 구청장에게 인수를 요청</p>

3. (생략)

<신설>

<신설>

4. “동물복지”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게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5. “동물보호센터”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할

한 동물을 말한다.

9. (현행 제3호와 같음)

10.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기질평가”란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4. “맹견”이란 법 제2조제5호 각목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12. -----

법 제35조 및 제36조-----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7. (생략)

8. (생략)

9.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을 말한다.

10. (생략)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구성) ①·② (생략)

③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

6.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5. (현행 제7호와 같음)

13. (현행 제8호와 같음)

<삭제>

14. (현행 제10호와 같음)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1. (생략)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4.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생략)
 - ④ ~ ⑥ (생략)
 제9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 ④ (생략)

---. -----

-----.

1. (현행과 같음)
2. -----
----- 법 제4조제3항-----

3. 법 제51조제1항-----

4.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5. ----- 「고등교육법」 제2조-----

6. (현행과 같음)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 법 제35조-----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명예감시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1조(보호동물의 공고) 구청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명예동물보호관-----

-----.

제21조(보호동물의 공고) -----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시행 2023. 4. 19.]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331호, 2023. 4.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3.4.

19.>

1.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 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3.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물복지”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게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5. “동물보호센터”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7.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8. “동물복지지원센터”란 동물의 구조, 치료, 보호, 분양, 동물보호 교육 및 홍보 등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시설을 말한다.
9.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

양이 등을 말한다.

10.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3.4.19.>]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동물복지 종합계획 및 서울특별시장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5년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복지계획(이하 “동물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3.4.19.>]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9.>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4.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3.4.19.>]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3.4.19.>]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4.19.>]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에서 이동 <2023.4.19.>]

제9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
2. 보호 중인 동물의 공고
3. 동물의 소유자 반환
4. 소유권 취득동물에 대한 기증 또는 분양 및 분양공고
5.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인도적 처리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④ 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자에게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제8조에서 이동 <2023.4.19.>]

제10조(동물 소유 등의 책임성 강화) 구청장은 관련기관 및 민간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동물보호윤리의 확산을 위한 반려동물·실험동물·농장동물 등 동물 대상별 소유 등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3.4.19.>]

제11조(반려동물의 날 지정 등) 구청장은 매년 10월 4일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반려동물의 날로 지정하여 동물 애호·동물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

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12.31.] <개정 2018.12.31.> [제10조에서 이동 <2023.4.19.>]

제12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와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15조제7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제11조에서 이동 <2023.4.19.>]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등록인식표를 장착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

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31.] [제12조에서 이동 <2023.4.19.>]

제14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9.>

1. 소유자
 2. 소유자의 주소
 3. 소유자의 전화번호
 4.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5.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6.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시행규칙 별지 1호서식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주소를 변경하고,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제13조에서 이동 <2023.4.19.>]

제15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중성화의 목적으로 포획한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해야 한다. 다만,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 <개정 2023.4.19.>

③ 구청장은 유기동물로 구조되어 제21조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길고양이의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구조 장소에 방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2항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3.4.19.>

④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생활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 또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고, 급식소의 관리와 운영은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4.19.>

⑤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4.19.>

⑥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중성화 사업 및 급식소 운영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31.] <신설 2023.

4.19.>

제16조(출입·검사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 사육·관리·보호자,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영업자 등(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기준 등에 맞지 않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동물보호실태 조사 결과와 정보가 정기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제15조에서 이동 <2023.4.19.>]

제17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감시원은 동물보호 활동에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명예감시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제16조에서 이동 <2023.4.19.>]

제18조(동물생명존중헌장) 구청장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구를 만들기 위하여 ‘금천구 동물생명존중헌장’을 제정·선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31.] [제17조에서 이동 <2023.4.19.>]

제19조(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① 구청장은 어린이,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의 관리·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31.] [제18조에서 이동 <2023.4.19.>]

제20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할 경우,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4.19.]

제21조(보호동물의 공고) 구청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4.19.]

제22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구조·보호·분양 및 동물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 동물분양센터 및 영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구조·보호·분양 및 동물복지에 관련된 교육·홍보·위원회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중전 제11조에서 이동 <2018.12.31.>][본조신설, 제19조에서 이동

<2023.4.19.>

제23조(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4.19.]

부 칙 (제899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보호조치 중에 있는 동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00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31호, 2023.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시행 2023. 10. 4.] [서울특별시조례 제8969호, 2023. 10. 4., 일부개정]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3.3.27.>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동물보호 수준 등을 평가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평가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 추천인사 및 명예동물보호관이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1., 2023.3.27., 2023.10.4.>

④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자치구의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17.9.21.>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17.9.21.>

⑥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해당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17.9.21>